의 안 번 호

2349

【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11. 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1. 8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5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김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민원인의 폭언,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·육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각종 지원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예방 및 치유 관련 지원기준 정비(별표)
- O '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' 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12조)
- O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)

다. 근거법규

- O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91조
- O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8조의 2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예방 및 치유 관련 지원기준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- 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)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·공정·친절·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·폭행,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)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"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"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- 1.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·호출장치·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
- 2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, 녹음전화 등의 운 영
- 3. 폭언·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
- 4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 단
- 5. 민원인의 폭언 ·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·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
- 6.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으로 고소·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·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